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08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청주서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 46명에 대한 정원 승인(2002.04.24)을 받아
- 청주소방서의 관할구역 및 소방인력 조정배치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정원의 총수 : 2,416명 ⇒ 2,462명 (46명 증원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06명 (변동없음)
 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914명 ⇒ 960명 (46명 증원)
 -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4명 (변동없음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2명 (변동없음)
- 다른 조례의 개정 :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
 - 청주소방서의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
 - 청주동부소방서 : 청주시 상당구, 청원군(1읍7면), 보은군 일원
 - 청주서부소방서 : 청주시 흥덕구, 청원군(6면)

□ 의안전문 : 별 첨

□ 신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□ 관계법령 발췌 : 별 첨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“2,416명”을 “2,462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2호중 “914명”을 “96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충청북도청주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명 칭	위 치	관할구역
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	청주시 관내	- 청주시 상당구 일원 - 청원군중 내수읍, 북이면, 남일면, 가덕면, 문의면, 낭성면, 미원면, 오창면 일원 - 보은군 일원
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	청주시 관내	- 청주시 흥덕구 일원 - 청원군중 옥산면, 강내면, 강외면, 남이면, 부용면, 현도면 일원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2,416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소방본부·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<u>914명</u></p> <p>3. 내지 4. (생략)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<u>2,462명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960명</u></p> <p>3. 내지 4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○ 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- ⑤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○ 제21조 (정원의 규정)

-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1. 집행기관의 정원
 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 5. 합의를행정기관의 정원
- ② - ④ (생략)